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79호
----------	-------

2019. 12. 04.

건명	논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희망마을 건설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11. 15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1. 15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「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」에 「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통합하여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,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개선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·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-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함. (안 제13조)
- 종전의 「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있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「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」에 통합하여 규정함. (안 제14조부터 제20조)
- 위원회 결정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함. (안 제21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, 「건설기준 진흥법」 제53조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